

행정자치부 시정요구

제 목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처리 업무 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

내 용

「위험물 안전관리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

이에 근거하여, 강원도 소방본부(○○○○과) 등 16개 소방서에서는 [표 1] 과 같이 6,392개의 위험 제조소 등¹²⁶⁾을 관리하고 있다

[표 1] 강원도 내 위험물 제조소 등 관리현황 (단위 : 개소)

계	제조소	저장소	취급소	비고
6,392	10	5,007	1,375	-

* 자료 : 강원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

제조소 등을 관리함에 있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제조소 등의 설치자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·인도한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

상속인, 제조소등을 양도·인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며, 같은 법 제3항에 따

126) “제조소 등”이라 함은 「위험물 안전관리법」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조소·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.

라 승계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그러나, 강원도 소방본부(○○○○과)에서는 제조소등을 허가한 후 [표 2]와 같이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사망하여 설치자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지위승계 처리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 없이 부적정하게 관리하였다.

[표 2] 강원도 소방서별 지위승계 미처리 현황

연 번	소방서명	상 호 명	지위승계 사유	과태료(천원)	비고
계				18,000	
1	춘천	○○○○	사망 제적	2,000	
2	원주	○○○○텔		2,000	
3	원주	○○○○		2,000	
4	태백	○○목욕탕		2,000	
5	평창	○○○모텔		2,000	
6	평창	○○○○○텔		2,000	
7	인제	○○○여관		2,000	
8	양양	○○○○		2,000	
9	양양	○○○○		2,000	

* 자료 : 강원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

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

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총 18,000천원 처분하시고,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